

통신사(通信使) 기록을 통한 단령(團領)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신 혜 성* · 박 선 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연구원⁺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Wearing the *Danryung* of the *Tongshinsa*

Hey-Sung Shin* · Sun-Hee Park⁺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Curator, The Chang Pudeok Memorial Gallery,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2007. 9. 27 토고)

ABSTRACT

This paper was built by following next steps.

First, based on the records of the *Tongshinsa*, the official diplomatic mission *Joseon* dispatched to Japan, the actual conditions of wearing a *Danryung*, a official robe, in the 18th century were researched. Then the difference of wearing state between the missions - in 1719, 1748 and 1764- was found and the reason why was analyzed.

In result two distinctions were found:

- 1) A black *Danryung* was worn in 1719 at the banquets and while receiving an official letter of reply, but a red *Danryung*, *Gongbok* or *Sibok* on the later trips.
- 2) In 1764 travel records there was some confusion of the names *Gongbok* and *Sibok*, which denote the same item of robes, according to the writer.

The reason why those changes and confusion were caused is analyzed as follows :

- 1) After the Japanese Invasion(1592) and the Manchu Invasion of *Joseon*(1636), a black *Danryung* replaced the *Gongbok* for a while. But after the mid-18th century, when the *Gongbok* was revived, that was reappeared in the official ceremonies.
- 2) In the mid-18th century, both *Gongbok* and *Sibok* system had been revised. But because both color system was similar, those revision became a cause of confusion between *Gongbok* and *Sibok*. For a while all ministers wore red *Gongbok* and *Sibok*, but after those revision the color of official's robe was changed by officials' rank: the higher ranking officials' *Gongbok* and *Sibok* are red, the lower ranking officials' are bluish green.

Key words: *Tongshinsa*(通信使), *Danryung*(團領), *Gongbok*(公服), *Sibok*(時服), Official Robe(官服), 18th century(18세기)

I. 통신사 파견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통신사(通信使)는 태종 4(1404)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交隣) 관계가 성립된 후,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幕府)의 장군(將軍)¹⁾에게 파견하였던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일컫는 명칭이다.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의 명칭은 통신사(通信使) 이외에도 보빙사(報聘使) · 회례사(回禮使) · 회례관(回禮官) · 통신관(通信官) 등 다양하였는데, 이 가운데 ‘통신(通信)’은 두 나라가 서로 ‘신의(信義)’를 통하여 교류한다’는 의미에 중심을 두고 있다.²⁾

사신 파견의 주된 목적은 임진왜란 전에는 주로 왜구 금압(禁壓) 요청, 임란 직후에는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라 하여 일본에 잡혀 간 피로인(被擄人) 쇄환과 일본국정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인조 14(1636)년 이후 다시 ‘통신사’³⁾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주된 임무는 일본의 실질적 세력자인 막부 장군의 직위 계승을 축하하는 것으로 되었다.

막부 장군이 바뀌게 되면, 막부의 명령을 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는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사절단을 구성한다. 이때 정사(正使) · 부사(副使) · 종사관(從事官)의 3인을 사절단의 대표로 임명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삼사(三使)’라 한다. 사절단은 이 밖에 제술관(製述官), 의원(醫員), 역관(譯官), 마상재(馬上才), 전악(典樂), 취수(吹手), 화원(畫員), 소동(小童) 등 300-500명으로 구성된다.

통신사 일행이 통과하는 객사에서는 사신 일행과 일본의 유학자(儒學者), 승려, 문인(文人)들이 만나 시와 그림을 나누었고, 필담(筆談)을 통해 역사와 풍속, 학문과 약품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신 일행이 방문한 곳을 중심으로 서화, 시문 등의 작품과 사신 행렬을 그린 병풍과 두루마리 그림을 비롯하여 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삽화, 판화 등 회화자료가 다수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밖에 통신사들이 일본에서 겪은 일들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다수 남아있어 당시 두 나라간의 외교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보여준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지금까지 조선시대 백관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오례의(五禮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예로 김미자(1982)⁴⁾, 이은주(2005)⁵⁾, 전혜숙 · 류재운(2006)⁶⁾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통신사의 복식을 연구한 경우, 통신사 일행의 여정에 따라 착용한 복식의 종류를 정리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궁민봉(1983)⁷⁾, 이자연(2003)⁸⁾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조선시대 관복 연구의 실질적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던 통신사 기록을 중심으로 18세기의 관복 착용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신사의 경우 일정한 공식 행사가 매회 반복되며, 사행마다 다양한 신분의 저자(著者)들이 기술한 기록이 여러 편 남아있어 중요 행사시에 착용된 관복의 통시적(通時的), 공시적(共時的) 비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통신사들이 남긴 사행록(使行錄)⁹⁾에 나타난 통신사의 복식 중 관복(官服)에 해당되는 것은 조복(朝服)과 단령(團領)이다. 그 중 조복은 ‘국서(國書)’와 직접 관계된 행사시에 삼사가 착용한 것으로, 에도(えど, 江戸)¹⁰⁾에서 막부 장군을 만나 국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대표적이다. 1719(숙종 45)년, 1748(영조 24)년과 1764(영조 40)년의 기록에서도 국서 전달시 삼사는 금관조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단령에 대한 기록은 참석하는 행사에 따라 공복(公服), 상복(常服), 시복(時服)의 3종류로 나뉘며, 경우에 따라 ‘흑단령(黑團領)’, ‘홍단령(紅團領)’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즉, 통신사의 사행록에 나타난 단령은 시기에 따라, 그리고 행사의 종류에 따라 명칭과 색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에 파견된 통신사의 관복 중에서 착용 상황에 일관성을 보이는 조복의 경우를 제외하고, 삼사 이하 원역(員役)의 단령을 중심으로 용례와 명칭을 살피는 동시에, 18세기 실록에 나타난

관복 제도 정비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관복 착용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18세기에 파견된 통신사 일행이 남긴 사행록(使行錄)을 중심으로, 공식 행사에서 삼사 및 원역(員役)의 단령 착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사행록은 총 6편으로, 1719년의 『해유록(海游錄)』¹¹⁾, 1748년의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¹²⁾과 『수사일록(隨槎日錄)』¹³⁾, 1764년의 『해사일기(海槎日記)』¹⁴⁾·『일관기(日觀記)』¹⁵⁾·『승사록(乘槎錄)』¹⁶⁾이 있으며,¹⁷⁾ 각각의 사행록 기록자의 이름과 신분은 <표 1>과 같다.

사행록을 통하여 분석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및 『경국대전(經國大典, 1460-1469)』,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 등의 법전과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사항을 기록한 『통문관지(通文館志, 1720년경)』와 비교분석하여 양란 이후 시대에 따른 상복(常服)·시복(時服)·공복(公服)의 착용 사례와 명칭·색상의 변화를 조사한 후, 다시 사행록에 기록된 관복과 비교 분석하였다.

III. 통신사 기록에 나타난 18세기 단령 변화 양상 분석

1. 공식 행사에서 통신사행의 단령 착용 실태

사행록에 기록된 공식 행사 중 삼사가 단령을 착용하는 경우는 대마도주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할 때, 교토(西京)나 에도(江戶)에 입성할 때, 대마도주

나 서경윤(西京尹)¹⁸⁾ 등 일본 현지의 인사들과 상견례(相見禮)를 하거나 접견(接見)을 하는 경우, 예단을 싸는 봉과(封裹) 의식을 행할 때, 회답서를 수령할 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3차례의 사행 기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사신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마도주가 주최하는 연회 참석, 교토입성 및 에도입성, 회답서 수령의 3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삼사 및 원역의 단령 착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1) 대마도주의 연회 참석

숙종연간에 초간(初刊)된 『통문관지』에 의하면 대마도가 주최하는 연회는 대마도에서의 ‘하선연(下船宴)’, 에도에 도착한 뒤 열리는 ‘별연(別宴)’,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서 벌어지는 ‘상선연(上船宴)’이 있으며 이것을 통틀어 피지연향(彼地宴享)이라한다.¹⁹⁾

대마도주의 연회에 참석한 사행단의 복식 중에서 먼저 삼사의 복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에 따라 흑단령(黑團領), 홍포(紅袍), 홍단령(紅團領), 공복(公服), 시복(時服)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719(숙종 45)년의 경우 대마도와 에도에서의 연회에서 삼사가 모두 흑단령을 착용한 것에 비해, 1748(영조 24)년에는 3번의 연회에서 모두 홍단령을 착용하였고, 1764(영조 40)년에도 대마도에서의 하선연과 에도의 별연에서 홍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공통적으로 홍단령을 착용한 1748년과 1764년의 경우 사행록에 따라 홍단령을 기록한 표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선연의 경우 『수사일록(1748)』에서는 삼사의 홍

<표 1> 연도별 사행록의 명칭과 기록자

사행 연도	서명	기록자
1719 (숙종 45)	해유록(海游錄)	제술관(製述官): 신유한(申維翰)
1748 (영조 24)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	종사관(從使官): 조명채(曹命采)
	수사일록(隨槎日錄)	군관(軍官): 홍경해(洪景海)
1764 (영조 40)	해사일기(海槎日記)	정사(正使): 조엄(趙嚴)
	일관기(日觀記)	제술관(製述官): 남옥(南玉)
	승사록(乘槎錄)	부사서기(副使書記): 원중거(元重舉)

단령을 공복으로 기록한 것에 비해²⁰⁾, 『해사일기』(1764)에서는 삼사의 복식은 구체적인 관복명칭은 없으나 동행한 원역의 시복과 구별하여 홍단령으로 기록하였다.²¹⁾ 에도 별연의 경우도 사행록에 따라 『해사일기』(1764)는 삼사의 복식을 홍단령으로 기록한 것에 비하여²²⁾ 같은 사행을 기록한 『승사록』(1764)에서는 삼사와 원역의 복식을 모두 시복으로 기록하였다.²³⁾

즉, 동일한 행사에 착용하는 복식이 시기에 따라 흑단령에서 홍단령으로 달라졌으며, 같은 시기에 착용된 동일한 복식에 대해서도 기록자에 따라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삼사 이외 동행한 원역의 관복에 대한 묘사는 적은 편이나 『해사일기』(1764)에는 대마도의 하선연에서, 『승사록』(1764)에서는 에도의 연회에서 원역들이 시복(時服)을 착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똑같은 1764년 사행의 대마도 하선연을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일기』에는

‘시복’으로 기록된 원역의 복식이 『승사록』에서는 ‘원역들이 그 품계에 따라 단령을 갖추고 참석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홍단령(紅團領)’과 ‘청단령(青團領)’이 같이 언급되고 있어²⁴⁾, 1764년 사행 때의 시복은 품계에 따라 색상이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마도주의 연회에 참석할 때 삼사와 원역이 착용한 복식에 대해 각각의 사행록에 나타난 기록은 〈표 2〉와 같다.

2) 교토 입성과 에도 입성

입성시의 차림 중 먼저 교토 입성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해유록』(1719)²⁵⁾과 『수사일록』(1748)²⁶⁾에는 삼사와 원역은 모두 홍단령으로 나타난다.²⁶⁾ 또한 『해사일기』(1764)에는 삼사는 홍단령을 입은 것으로,²⁷⁾ 『일관기』(1764)에는 삼사 이하 공복(公服)을 착용한 것으로²⁸⁾ 기술되어 있다.

에도 입성 시에 복식은 『해유록』(1719)에서는 삼

〈표 2〉 대마도주의 연회에서 삼사 및 원역의 복장

시기	1719	1748		1764		
서명	해유록	봉사일본시 문견록	수사일록	해사일기	일관기	승사록
기록자	제술관 신유한	종사관 조명채	군관 홍경해	정사 조엄	제술관 남옥	부사서기 원중거
대마도 하선연	흑단령 (삼사이하)	〈기록없음〉	공복홍단령 (삼사)	홍단령(삼사), 시복(원역)	〈기록없음〉	홍/청단령 (상부방/삼방)
에도 별연	흑단령(삼사)	홍포(삼사)	〈기록없음〉	홍단령(삼사), 시복(원역)	〈기록없음〉	시복 (삼사, 원역)
대마도 상선연	〈기록없음〉	홍단령(삼사)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표 3〉 교토/에도 입성할 때 삼사 및 원역의 복장

시기	1719	1748		1764		
서명	해유록	봉사일본시 문견록	수사일록	해사일기	일관기	승사록
기록자	제술관 신유한	종사관 조명채	군관 홍경해	정사 조엄	제술관 남옥	부사서기 원중거
교토입성	홍단령	〈기록없음〉	홍단령 (삼사, 원역)	홍단령(삼사)	공복 (삼사이하)	〈기록없음〉
에도입성	홍단령 (삼사, 제술관, 상통사, 의관)	홍포 (삼사, 원역)	홍단령 (삼사, 원역)	홍단령(삼사), 시복(원역)	공복 (삼사이하)	시복

사·제술관·상통사·의관 등이 홍단령을 입은 것으로,²⁹⁾ 1748년에도 삼사와 원역 모두 홍단령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³⁰⁾. 이에 비해 1764년에는 동일한 행사에 참석한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삼사의 경우 『해사일기』는 홍단령으로,³¹⁾ 『일관기』에는 공복으로,³²⁾ 원역의 경우도 『해사일기』와 『승사록』에는 시복,³³⁾ 『일관기』에는 공복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교토와 에도에 입성할 때 삼사와 원역이 착용한 복식에 대해 각각의 사행록에 나타난 기록은 〈표 3〉과 같다.

3) 회답서의 수령

에도에서 회답서를 받을 때 차림은 1719년에는 삼사 이하 모두 흑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1748년에는 삼사가 공복을 착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1764년의 경우 『해사일기』와 『일관기』에는 삼사의 복식을 ‘공복’으로 기록한 것에 비하여,³⁴⁾ 『승사록』에는 ‘시복’으로 되어있다.³⁵⁾ 이처럼 동일한 사행의 행사임에도 원역복식의 경우에도 『일관기』에는 ‘공복’, 『승사록』에는 ‘시복’으로 되어있어 당시에 관복명칭에 적지 않은 혼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답서를 받을 때 삼사와 원역이 착용한 복식에 대해 각각의 사행록에 나타난 기록은 〈표 4〉와 같다.

2. 사행 간 공식 행사 복식 기록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 분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사행록을 분석한 결과 공식행사 참석자의 단령은 시기에 따라 색상변화가 나타나며, 1764년의 경우 동일한 사행을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자에 따라 복식명칭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사행록에 나타난 복식과 타 문헌에 나타난 관복제도의 변화를 비교하여 관복색상과 단령명칭 변화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1719년과 1748년 사행간 복식 변화의 원인

1719년과 이후 2차례의 사행(1748, 1764년)을 비교하면, 〈표 2〉의 대마도주의 연회참석과 〈표 4〉의 회답서 수령시의 복식에서 시기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1719(숙종 45)년에는 흑단령(黑團領)으로 기록되었으나, 1748(영조 24)년과 1764(영조 40)년에는 흑단령 대신, 홍단령(紅團領) 또는 공복

〈표 4〉 회답서 수령시의 삼사 및 원역의 복장

시기	1719	1748		1764		
서명	해유록	봉사일본시 문견록	수사일록	해사일기	일관기	승사록
기록자	제술관 신유한	종사관 조명채	군관 홍경해	정사 조엄	제술관 남옥	부사서기 원중거
회답서 수령	흑단령 (삼사이하)	공복(삼사)	〈기록없음〉	공복(삼사)	공복(삼사이하)	시복

〈표 5〉 사행에 따른 공식행사시 관복 명칭 변화 및 관복제도 재정비 과정

행사	1719	관복제도 정비 - 1차	1748	관복제도 정비 - 2차	1764
대마도주의 연회	흑단령	1720년경 『통문관지』 정리	홍단령, 공복	1757년 당하관 시복 제도 재정비 : 『조선왕조실록』	홍단령, 시복, 풀계에 따른 단령
교토/ 에도입성	홍단령	1744년 공복 제도 재정비 : 『조선왕조실록』	홍단령		홍단령, 공복, 시복
회답서 수령	흑단령		공복		공복, 시복

(公服), 시복(時服)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세기에는 공복을 착용해야 할 경우 대신 흑단령을 착용하는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18세기 중반 이후 공복제도의 회복과 함께 다시 공복을 착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는 사행에 따른 공식행사시 관복 명칭 변화와 실록에 나타난 관복제도 재정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① 17세기 공복을 대신한 흑단령

임란 직후인 1601(선조 34)년 3월 예조에서는 조하(朝賀) 등 공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경제 사정으로 인해 복두와 훌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시복(時服)으로 입참케 하자고 건의하여, 윤허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당시의 시복의 제도는 중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청색으로³⁷⁾ 흑단령이며, 상참·조참·배사시의 관복이므로,³⁸⁾ 1601년의 공복을 대신한 시복 역시 흑단령이라 할 수 있다.³⁹⁾

공복을 대신한 시복 흑단령의 예는 그 후에도 확인할 수 있어 1638(인조 16)년 10월 예조에서는 육례(六禮)시 예문대로 하면 백관은 조복, 집사(執事)는 공복을 착용해야하나, 조복·공복의 준비가 어려우므로 정·부사 외에는 흑단령을 착용하도록 전의하였다.⁴⁰⁾ 그리고 1671(현종 12)년에도 왕세자의 가례 시 정사(正使) 이하의 여러 집사(執事), 주인(主人), 빙자(賓者)의 복식은 예문대로 하면 모두 공복을 착용해야하나 무인년과 신묘년의 경우에 정사·부사·주인·빙자(賓者)만 공복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흑단령(黑團領)을 대신 착용하였음을 예를 들어⁴¹⁾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이 날의 기사 중 '신묘년에 흑단령은 간략하니 예문(禮文)대로 공복을 준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염려하여 흑단령을 대신 사용하도록 전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공복대신 흑단령을 착용하는 주요 목적은 '비용 절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19(숙종 45)년 사행의 복장을 이해하기 위해 17세기 중반 이후인 1655(효종 6)년과 1682(숙종 8)년에 파견한 사행의 기록인 『부상록(1655, 효종 6)』,

『동사록(1682, 숙종 8)』과 『동상일록(1682, 숙종 8)』을 조사하였으나, 연회나 회답서를 받을 때의 복장을 공복·관복·장복 등으로 기록하여 관복(官服)임을 알 수 있을 뿐, 색상을 유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복 대신 흑단령을 착용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파견된 1655년과 1682년의 사행에서는 공복을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대신 흑단령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1719(숙종 45)년 사행의 경우, 연회와 회답서 수령 등은 본래 공복을 착용해야하는 행사이나 이러한 선례를 따라 흑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은 1711(숙종 37)년 파견된 사행의 정사 조태억(趙泰億)이 흑단령을 입고 있는 초상이다.



<그림 1> 18세기 흑단령(1711)⁴²⁾
(狩野常信筆「趙泰億像」부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② 18세기 공복제도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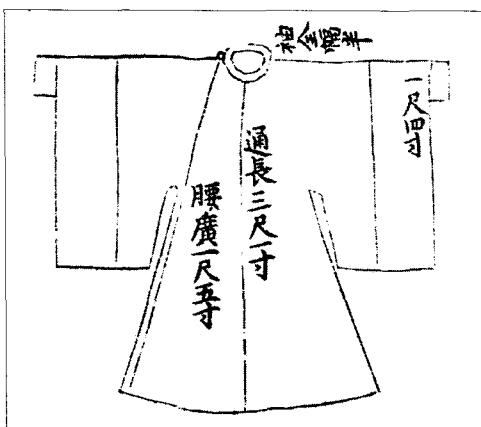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48년, 1764년의 사행에서는 대마도주의 연회와 회답서를 받을 때 흑단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점은 1720년경 실시된 『통문관지』 정리와 실록에 나타난 1744년 공복제도의 정비와 관련되어 해석할 수 있다.

1720년경 정리된 『통문관지』에 의하면 '피지연향(彼地宴享: 대마도 하선연, 애도별연, 대마도 상선연)'은 '使以下具公服'으로, '회답을 받는 의식'은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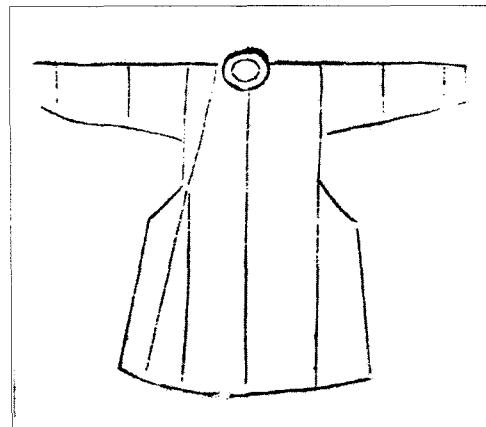
使公服出迎'이라 하여, 사신의 복식으로 공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사행(1748년, 1764년) 전인 1744년의 실록기록에 의하면 당상관은 비색(緋色), 당하관은 홍색(紅色)으로 백관의 공복이 정비되어 모든 계급이 붉은 색 계통을 공복으로 착용토록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통문관지』와 실록의 내용으로 보아 1744년 이후의 사행에서는 연회 참석과 회답서를 받을 때 공복을 착용하는 원칙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재정비된 공복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조선초기의 공복제도와는 다른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미자(1982), 이은주(2005)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 초기 공복은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에 나타난 <그림 2>의 악사의 공복(公服)과 형태가 같은 녹초삼과 조선시대 왕릉의 문인석상 등을 종합해 볼 때 둥근 깃, 우임, 넓은 소매, 옆트임 없이 두루마기와 같이 막힌 무, 선(襯)을 두르지 않은 것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⁴⁴⁾ 이를 <그림 3>의 조선 초기 상복 단령과 비교하면, 넓은 소매와 두루마기와 같이 막힌 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나, 임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포의 소매가 넓어졌으므로 조선 초기 공복과 조선 후기 단령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는 무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15세기 공복
(『樂學軌範』卷九 綠絹衫)



<그림 3> 15세기 단령
(『樂學軌範』卷九 黑團領)

그러나 왕릉의 문인석상을 고찰한 연구 결과 숙종대 이후 공복은 두루 막힌 무가 아닌 옆트임이 있고 여분을 뒤로 접는, 단령무의 형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⁴⁵⁾ 1817년 3월 문조세자의 입학례 행사와 관련된 「왕세자출궁도(王世子出宮圖)」 중 박사가 착용한 복식에서 공복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박사가 착용한 홍색 공복의 옆선에는 무의 안쪽으로 생각되는 푸른색 부분이 나타나, 옆선이 트인 단령무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 19세기 초 공복⁴⁷⁾
(『王世子出宮圖』중 「脩幣圖」부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공복은 양란 이후 경제적 상황에 의해 한동안 흑단령으로 대신하였으나, 18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공복 제도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8세기의 공복의 제도는 두루 막힌 무를 가진 조선 전기의 형태가 아닌 무에 옆트임이 있고 여분을 뒤로 접는 단령의 형태로 회복되어, 공복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상복·시복과 유사한 형태로 재정비된 공복을 착용함으로써 그 제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즉, 1748년 대마도주의 연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홍단령 계통이 공복으로 사용되었으며, 형태 또한 조선 초기 공복 형태가 아닌 시복·상복 등의 다른 관복과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복의 변화는 이후 시복과 공복 사이에 혼란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1764년 사행 복식 기록에 나타난 혼란의 원인

1764(영조 40)년 사행록 중 『승사록』에 ‘품계에 따른 단령’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원인과 기록자에 따라 같은 복식을 ‘시복’, ‘공복’ 등으로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는 혼동이 나타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① 18세기 공복제도의 정비과정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공복은 정3품 이상 당상관은 홍포(紅袍), 종3품 이하 6품까지는 청포(青袍), 7품 이하 9품은 녹포(綠袍)를 입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훌(笏)은 4품 이상은 상아, 5품 이하 9품은 나무로 만든 것을 들고, 관(冠)은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복두(幞頭)를 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 공복은 의복의 형태를 볼 때 등근 깃, 우임, 넓은 소매, 두루마기와 같이 막힌 무, 선(襍)을

두르지 않은 것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상복이나 시복 단령과는 달리 두루마기와 같이 막힌 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의복과 관(冠)의 형태가 다른 관복과 다르고 훌(笏) 등 부속품이 있어 양란 이후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동안 그 제도가 복구되지 못하고, 공복 착용이 필요한 경우 예복 기능의 흑단령을 대신 착용한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1744(영조20)년 8월의 기사를 보면⁴⁸⁾ 찬집청(纂輯廳)에 하교하여, 2품 이상은 비색(緋色), 당상관 정3품은 홍색(紅色), 종3품 이하는 청색(青色), 7품 이하는 녹색(綠色)을 입는 옛 제도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당상관 이상은 비색(緋色), 당하관 이하는 홍색(紅色)을 입도록 하고 이를 『속대전』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날의 기사 중에 비색(緋色)과 홍색(紅色)으로 정해진 관복의 제도를 공복이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품계에 따른 복색(服色)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복에 해당되므로 이 규정은 공복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744년 이후 당분간 ‘공복’은 모든 계급에서 붉은 색 계통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44(영조20)년 8월 이날의 기록 말미에 ‘후일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당하관이 마침내 녹색을 입던 옛 제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으므로, 영조실록이 편찬되던 시기(1778-1781)에는 이미 당상관 이상은 홍색, 당하관 이하는 녹색으로 품계에 따라 다른 색의 공복을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 고종2)』의 예전(禮典) 의장(儀章) 조의 속대전(續大典: 1746. 영조 22) 규정에 의하면 당상 3품 이상은 담홍포, 당

〈표 6〉 1764(영조 40)년 사행록 별 관복 표현 비교

시기	1764		
서명	해사일기	일관기	승사록
기록자	정사 조업	제술관 남옥	부사서기 원중거
대마도 하선연	홍단령(삼사), 시복(원역)	〈기록없음〉	홍/청단령(상부방/삼방) 품계에 따른 단령(원역)
에도 별연	홍단령(삼사), 시복(원역)	〈기록없음〉	시복(삼사, 원역)
대마도 상선연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교토입성	홍단령(삼사)	공복(삼사이하)	〈기록없음〉
에도입성	홍단령(삼사), 시복(원역)	공복(삼사이하)	시복(원역)
회답서 수령	공복(삼사)	공복(삼사이하)	시복

하 3품 이하는 홍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시 대전통편(大典通編: 1781-1785. 정조5-9) 규정에서는 당하 3품 이하의 홍포를 폐지하고 원전을 따라 청록포(靑綠袍)를 복구하였다는⁴⁹⁾ 보완설명으로도 1780년경에 이미 '공복'은 '당상 홍색, 당하 청록색'의 2단계로 나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1748(영조 24)년 사행 당시에는 모든 품계의 공복이 홍단령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에 비해, 1764(영조 40)년 사행 때에는 품계에 따라 공복의 색이 홍색과 청록색으로 나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5〉는 향응(饗應)에 참석한 사신 일행을 그린 그림 중 상상관과 상판사 부분이다. 상상관은 정사, 부사와 같은 색의 홍포를 입고 여지금대(荔枝金帶)를 띠고 있으며 상판사는 녹색의 포를 입고 흑각대를 띠었다. 둘 다 관모로는 사모를 쓰고 있으나, 훌(笏)처럼 생긴 것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복이 아닌가 한다.



〈그림 5〉 18-19세기 초 공복⁵⁰⁾
(필자미상, 18세기 초정, 국사편찬위원회소장)

② 18세기 시복제도의 정비과정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조참(朝參) · 상참(常參) · 조계(朝啓)에는 흑의(黑衣)를 입는다는 내용과 함께, 상복은 복색(服色)에 대한 언급 없이 정3품 이상 당상관은 사(紗), 라(羅), 능(綾), 단(段)을 사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시복이라는 명칭은 『경국대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록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부터 시복이라는 명칭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⁵¹⁾ 의례용으로 흑색(黑色)을, 일상집무용 상복(常服)으로는 다양한 색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⁵²⁾

조선 초기에 명칭과 용도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복과 상복은 이후 착용 용도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18세기 시복제도의 정비 과정을 보기 전, 17세기 초에 나타난 상복과 시복의 혼란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i) 임란 후 상복 홍단령 복구

임진란 직후인 1601(선조 34)년 6월⁵³⁾의 기사에 의하면 원래 홍색, 흑색 두 가지이던 관복이 변란 후 모두 흑색 일색이므로 홍색을 복구하자는 건의가 나타난다. 이 날의 논의 중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은 '성종(成宗) 초년에 조신(朝臣)의 복색을 아청(鴉青)·초록(草綠)·목홍(木紅)을 상용하게 하였는데, 어느 때부터 일체 담홍색(淡紅色)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우의정 윤승훈(尹承勳)은 '백관의 복색은, 처음에는 일정한 제도가 없었으나 오로지 홍색을 사용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하여 국초에 여러 색의 관복을 착용하던 것에서 임란 이전에는 이미 홍색으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의 논의 끝에 같은 달(1601년 6월) 27일 상제(祥祭) 후 변복부터 상복(常服) 단령(團領)은 홍색 단령의 제도를 복구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군신(君臣) 구별을 위해 신하의 상복(常服)으로는 '천홍(淺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601년 6월 이후 상복은 홍색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ii) 17세기 초 상복과 시복 개념의 반전

그러나 1610(광해 2)년과 1611(광해 3)년에 걸쳐 상복과 시복의 명칭에 관한 논란이 나타난다. 1610(광해 2)년 5월의 기사에 의하면⁵⁴⁾ 예조에서 유생의 상복과 중국 사신을 맞을 때의 백관의 상복은 흑단령이라고 아뢰며, 같은 해 9월에⁵⁵⁾ 다시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간에서 홍단령(紅團領)을 상복, 흑단령(黑

團領)을 시복(時服)이라 하나, 『오례의』에 의하여 상복은 흑색이며 이것이 의례용임을 아뢰고 있다. 계속하여 1611(광해3)년 10월⁵⁶⁾ 세자의 친영가례에 대한 논의에서, 동·서반 2품 이상이 상복을 입기로 한 것에 대해 사헌부에서는 상복차림은 너무 간술한 것이 아닌가하며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상복을 흥색, 시복을 검은색으로 생각하는 관례에 의해 평상시 입던 흥색 옷으로 성례(盛禮)를 배종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결국 『오례의』대로 궁관 공복, 동·서반 2품 이상 상복을 착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홍단령-상복-일상 집무복/ 흑단령-시복-의례복'으로 여기던 것이, '홍단령-시복-일상 집무복/ 흑단령-상복-의례복'으로 재규정되었다. 이처럼 시복은 1610년 이전에는 예복인 흑단령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으나, 1610년 이후에는 일상 집무복인 홍단령을 의미하게 되었다.

(iii) 18세기 시복 제도의 정비

18세기 중반, 17세기에 홍단령으로 정비되었던 시복제도에 다시 변화가 나타난다. 1757(영조 33)년 12월⁵⁷⁾의 기사 중 당하관(堂下官) 시복(時服)에 대한 논의에서, 당하 조관(堂下朝官)의 옛 제도는 녹포(綠

袍)를 착용하는 것이었으나 임진(壬辰)·병자(丙子) 양란이후 홍포(紅袍)로 변하였다고 지적하며, 당하관의 용복(戎服) 외에는 홍포(紅袍)를 착용하지 말고 옛 제도대로 녹색(綠色)을 사용하도록 시복 제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경우 시복이 흥색 일색이었으나 1757년 이후 '시복'은 '당상 흥색, 당하 녹색'의 2단계로 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공복제도 정비와 관련된 1744(영조 20)년 8월⁵⁸⁾의 기록과 시복제도 정비와 관련된 1757(영조 33)년 12월⁵⁹⁾의 기록을 함께 보면, 18세기 중·후반기에 관복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복과 시복은 모두 '전 계급 흥색 착용'에서 '품계에 따라 당상 흥색, 당하 (청)녹색'의 이중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공복과 시복의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1764(영조 40)년의 사행에서 같은 단령을 두고 기록자에 따라 '공복' 또는 '시복'으로 다르게 기록하는 명칭의 혼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7〉 시복 및 상복의 명칭, 색상, 용도의 변화 과정

시기	일상 집무용	의례용	비고
경국대전	상복(常服) : 색 규정 없음.	흑색(黑色)	의례용은 흑의(黑衣)로 규정되었으나 시복(時服) 명칭은 나타나지 않음. 상복(常服)에 대한 색상규정은 없음.
성종(成宗)초년	초록(草綠) ·목홍(木紅)	흑색(黑色) =아청(鴉青)	아청(鴉青) · 초록(草綠) · 목홍(木紅)을 상용하게 하고, 옥색(玉色) · 치색(緇色) · 담황색(淡黃色) 등은 금함. 아청(鴉青)은 의례용 흑단령으로 볼 수 있음.
성종 이후 - 선조 이전 시점	상복(常服) : 담홍색(淡紅色)	시복(時服) : 흑색(黑色)	1519(중종 14)년 실록에 시복, 상복의 용도 등장 의례용-시복(時服)-흑색(黑色) 일상집무복-상복(常服)-담홍색(淡紅色)
임진왜란	흑색(黑色)	흑색(黑色)	홍색과 흑색의 이중구조였던 관복이 임란 후 흑색(黑色) 일색으로 변화
1601(선조 34)	상복(常服) : 천홍(淺紅)	시복(時服) : 흑색(黑色)	상복(常服) 홍단령의 복구
1610(광해 2)	시복(時服) : 흥색	상복(常服) : 흑색(黑色)	의례용-상복(常服)-흑색(黑色), 일상집무용-시복(時服)-홍색(紅色)으로 반전
1757(영조 33)	시복(時服) : 흥색/녹색	상복(常服) : 흑색(黑色)	당하관 일상집무용-시복(時服)의 녹색(綠色) 규정 부활

IV. 맺음말

조선시대의 관복제도는 『경국대전』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임진(壬辰 1592-1598), 병자(丙子 1636-1637) 양란(兩亂)을 거치며 큰 혼란을 겪고, 이후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정비와 함께 재건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관복 연구의 실질적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던 통신사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양란이후 문란해진 관복제도가 재정비되는 18세기 관복용 단령의 착용 실태를 고찰하였다.

18세기에 파견된 통신사행을 초기(1719, 숙종 45년), 중기(1748, 영조 24년), 후기(1764, 영조 40년)로 나누어, 당시 관복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통신사행의 복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정리할 수 있다.

초기는 '양란 이후 혼란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전후의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기로, 정치 경제적 혼란에서 나타난 물자 부족으로 인해 관복제도가 간소화되어 있었다. 즉, 양란(兩亂)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모든 관복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공복을 착용해야 할 상황에 대신 흑단령을 착용토록 하는 것을 실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사 일행의 복식에도 반영되어, 대마도주의 연회 등 공복을 입어야 할 상황에 흑단령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기는 '공복제도의 회복기'에 해당한다. 1744(영조 20)년 8월 실록에 의하면 백관의 공복이 당상관 비색(緋色), 당하관 홍색(紅色)으로 규정되어 공복제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공복 제도가 회복은 되었으나 조선 초기와는 달리 모든 계급이 붉은 색 계통의 포를 착용했으며, 형태도 시복, 상복과 동일한 형태의 단령포(團領袍)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파견된 사행에서는 연회 참석과 회답서를 받을 때 착용한 관복이 흑단령이 아닌 홍단령 또는 공복으로 기록되어있어, 공복제도가 회복된 것 뿐 아니라 '단령'으로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는 '공복 및 시복 제도 정비와 혼란기'로 볼 수 있다. 1757(영조 33)년 당하관 시복을 녹색으로 규정하여, 이후 시복은 '당상 홍색, 당하 녹색'의 2종

구조를 지니게 된다. 또한, 공복의 경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44년 이후 수십 년이 지나 당하관이 녹색을 입던 제도가 회복되었다는 실록의 기록과, 1780년대 편찬된 『대전통편』에서 당하관의 청록포 복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세기 중·후반기의 관복 정비 과정에서 공복과 시복은 '전 계급 홍색 착용'에서 '품계에 따라 당상 홍색, 당하(청)녹색'의 이중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복과 시복의 혼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764(영조 40)년 사행 당시 공복의 색이 계급에 따라 홍색과 녹색의 이중구조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때의 사행에서 같은 단령을 두고 기록자에 따라 '공복' 또는 '시복'으로 다르게 기록하는 명칭의 혼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공복과 시복 모두 계급에 따라 홍색과 녹색의 이중구조를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통해 백관의 시복, 상복, 공복 변화 과정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 양란 이후 공복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견해에서 나아가 보다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V.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사행록에 나타난 정사, 부사, 종사관의 관복을 기준으로 볼 때, 삼사는 당상관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통문관지(通文館志)』의 규정이니⁶⁰⁾ 18세기 통신사 중 삼사의 관직을 살펴보면 정사는 당상관에 해당되나 부사와 종사관은 당하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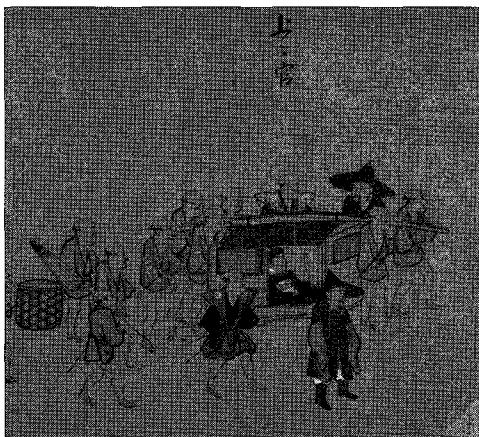
이 차이의 원인 찾으려면 통신사 일행의 구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사의 일행은 크게 정사·부사·종사관(從事官)·상상관(上官)·상관(上官)·차관(次官)·중관(中官)·하관(下官)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상상관에는 당상역관, 상관에는 제술관(製述官)을 비롯하여 서기(書記), 상판사(上判事)·차상판사(次上判事)·압물판사(押物判事)의 통역관, 의원(醫員),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과 군관(軍官) 등이 해당된다.

『통문관지』 교린(交隣) 조에 ‘왕명을 전달하는 의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3사신은 본국의 평교자(平橋子)에 타고, 당상관(堂上官)은 왜국(倭國)의 견여(肩輿)에 타고, 당하관(堂下官)은 말을 탄다…(중략)...제5문에 이르면…(중략)...상관(上官)이 하는 말에서 내린다. 제6문에 이르면 상상관(上上官)과 제술관과 양의가 견여에서 내리며, 제7문에 이르면 3사신이 교자에서 내린다.⁶¹⁾

이는 1711(숙종 37)년 사행을 그린 「등성행렬도(登城行列圖)」⁶²⁾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상관과 제술관, 양의는 다른 원역들과 달리 <그림 6>과 같이 당상관이 타는 견여를 타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3사신은 사행 인원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위치이며, 상상관(上官)인 당상역관과 상관(上官) 중 제술관·양의 등 일부가 당상관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상관(上官)은 당하관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견여를 탄 상상관 (1711)⁶³⁾
(漂喜左衛門筆「登城行列圖」, 국사편찬위원회소장)

따라서 사신으로 파견될 때 해당 관리가 국내에서의 품계보다 높은 등급의 관복을 차용토록 하는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쇼군(しょうぐん), 일본의 역대 무신정권(武臣政權)인 막부(幕府)의 수장(首長)을 가리키는 칭호.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5권, p. 639.
- 2) 위의 책, pp. 259-260.
- 3) 조선시대에 들어와 통신사의 명칭이 처음 나타난 것은 1413(태종 13)년이었으나, 정사 박분(朴貢)이 도중에 병이 나 사신 파견이 중지되었다. 그 뒤 통신사의 명칭을 가지고 일본에 파견된 사행은 1428(세종 10)년 정사 박서생(朴瑞生) 이하의 사절단이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조선이 도쿠가와(徳川) 막부를 신의를 통할 수 있는 통신국(通信國)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1607년, 1617년, 1624년에 파견한 사절단을 ‘통신사’라 하지 않고,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라는 명칭을 썼다. 통신사의 호칭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36년부터이다. 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3권, pp. 236-239.
- 4) 김미자 (1982). 우리나라 공복(公服)에 관한 연구. *복식*, 6, pp. 173-189.
- 5)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時服)과 상복(常服)제도 변천. *복식*, 55(6), pp. 38-50.
- 6) 전혜숙·류재운 (2006). 조선 태종대 관복제정에 관한 연구. *복식*, 56(7), pp. 69-78.
- 7) 궁민봉 (1983). 조선 통신사 복식의 일연구. *복식*, 7, pp. 83-102.
- 8) 이자연 (2003). 1711년 조선통신사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4), pp. 541-550.
- 9) 본 연구에서는 통신사들이 남긴 일기 형식의 기록을 사행록(使行錄)이라 지칭하도록 하겠다.
- 10) 일본의 수도인 도쿄(とうきょう, 東京)의 옛 명칭.
- 11) 민족문화추진회 (1977a). *海游錄*. 국역 해행총재 I, II.
- 12) 민족문화추진회 (1977b). *奉使日本時聞見錄*. 국역 해행총재 X.
- 13) 임기중 편 (2001). *隨槎日錄*. 연행록전집 59. 동국대학교 출판부.
- 14) 민족문화추진회 (1977c). *海槎日記*. 국역 해행총재 VII.
- 15) 남옥 (1764). *日觀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 16) 원중거 (1764). *乘槎錄*. 고려대 육당문고 소장본.
- 17) 18세기에 통신사는 4차례(1711, 1719, 1748, 1764) 파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에 언급한 사행록 6편과 함께 1711년 부사(副使) 임수간(任守幹)이 쓴 동사일기(東槎日記)와 1764년 군관(軍官) 민혜수(閔蕙洙)가 쓴 사록(槎錄)도 조사하였으나, 관복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였다.
- 18) 京都司所代의 중국식 명칭. 직할지인 京都를 다스리는 장관으로 경유(京尹)·경조윤(京兆尹)이라고도 한다. 서경은 이른바 일본 천황의 도읍으로 에도의 서쪽에 있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민족문화추진회 (1977). *해행총재(속) X*, p. 119.
- 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편집위원회 (1998). *국역通文館志* I. 卷六. 彼地宴享(中략) 使以下具公服(后략).
- 20)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pp. 298-299. (三月) 十一日島主設宴午後三使具公服紅團領帽帶乘肩輿

- 21) 민족문화추진회 (1977c). 앞의 책. 海槎日記 (癸未十一月) 初六日己未 (중략) 島主送奉行 請行下船宴於府中例他 三使着紅團領裨將具戎服員役着時服冠帶 (후략).
- 22) 위의 책. (三月) 初五日丙辰 (중략) 留江戶赴馬州守宴席 (중략) 三使俱紅團領 (후략).
- 23) 원중거 (1764). 앞의 책. 乘槎錄 甲申 3/5(에도 별연) (중략) 三使相及員役具時服 (후략).
- 24) 위의 책. 癸未 11/6 (대마도 하선연) ~島主請坐三房皆赴宴 上副房紅團領 三房青團領 軍官羽笠 員役各從其品具團領.
- 25) 민족문화추진회 (1977a). 앞의 책. 海游錄 九月十一日庚辰 (중략) 今日當宿倭京 使臣以下當着紅團領云 (중략) 時使行入實相寺改服.
- 26)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p. 389. (五月) 初二日 (중략) 旣例三使臣及員役皆着紅團領以其將過倭京也.
- 27) 민족문화추진회 (1977c). 앞의 책. 海槎日記. (正月) 二十八日 (중략) 改着紅團領 員役官服 軍官戎服 以其將入西京之故耳.
- 28) 남옥 (1764). 앞의 책. 日觀記 三(秋), (甲申正月) 二十八日 (중략) 自此入倭都例改服而行三使以下皆具公服 (후략).
- 29) 민족문화추진회 (1977a). 앞의 책. 海游錄 九月二十七日丙申 (중략) 三使臣着紅團領 余及上通事醫官亦以紅團領.
- 30) 민족문화추진회 (1977b). 앞의 책. 奉使日本時聞見錄 (五月) 二十一日 甲辰 三使及諸員役具烏帽紅袍 (후략);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隨槎日錄 (五月) 二十一日 到江戶 (중략) 三使着紅團領員役?着紅團領.
- 31) 민족문화추진회 (1977c). 앞의 책. 海槎日記 四 甲申年 二月 十六日 戊戌 陰雨 午後入江戶館所于實相寺飯後三使着紅團領員役時服
- 32) 남옥 (1764). 앞의 책. 日觀記 甲申二月十六日 戊戌 (중략) 三使以下皆具公服.
- 33) 원중거 (1764). 앞의 책. 乘槎錄 甲申二月十六日 戊戌 (에도 입성) ~三十五里入江戶晚發三使相時服員役從之.
- 34) 민족문화추진회 (1977c). 앞의 책. 海槎日記 三月 初七日 戊午 (중략) 聞執政持回答書而來 飯後三使具公服 員役亦如之; 남옥 (1764). 앞의 책. 日觀記 三月 初七日 戊午 三使以下具公服
- 35) 원중거 (1764). 앞의 책. 乘槎錄 三月 初七日 三使相團領皆時服而三書記不與
- 36) 宣祖實錄. 24집 219면, 34년 3월 18일 丙辰, 禮曹啓曰 兵曹啓辭 朝賀色議定事 傳教矣. 朝賀時, 當用公服, 此時百官, 草草冠服, 亦僅措備, 幣頭袍笏, 十無一二. 若待盡備之後, 始行朝家大禮, 事體未安. 姑以時服入參, 似爲無妨.
- 37) 中宗實錄. 15집 483면, 13년 9월 27일 甲子, 時服鴉青
- 38) 앞의 책. 15집 543면, 14년 6월 9일 辛未, 黑色 非我國所產 而不可常着. 常參·朝參·拜辭時 必以時服見者, 以禮見也.
- 39) 光海君日記. 태백산본 2년 5월 19일 癸亥 기사에 의하면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흑단령(黑團領)은 상복(常服)이라고도 하고 시복(時服)이라고도 하는데, 비록 정확하는 알지 못하겠으나, 알성할 때에 이른바 유생들의 상복과 중국 사신이 올 때의 이른바
- 백관의 상복은 분명 흑단령입니다 하여 1610년을 기점으로 '홍단령-상복-일상 집무복/ 흑단령-시복-의례복'의 개념이 '홍단령-시복-일상 집무복/ 흑단령-상복-의례복'으로 바뀌므로 1601년 기사 중 시복은 예복으로서 흑단령이라 할 수 있다.
- 40) 仁祖實錄. 35집 37면, 16년 10월 9일 戊戌
- 41) 顯宗改修實錄. 38집 51면, 12년 2월 17일 己亥
- 42) 국립중앙박물관 (1986). 조선시대 통신사, 三和出版社, p. 50.
- 43) 英祖實錄. 43집 144면, 20년 8월 5일 己酉
- 44) 김미자 (1982). 앞의 책, pp. 185-186; 이은주 (2005). 앞의 책, p. 40.
- 45) 김미자 (1982). 위의 책, pp. 173-189.
- 46) 임재영. 홍나영, 이은주(1997). 왕세자출궁도의 복식 연구. 복식, 31, pp. 47-58.
- 47) 고려대학교박물관학예부 (2001). 조선시대기록화의 세계.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p. 38.
- 48) 英祖實錄. 43집 144면, 20년 8월 5일 己酉
- 49) 大典會通 卷之三 18-19 禮典 儀章 服
- 50)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국사편관위원회 (2005). 조선시대통신사행렬. 부산: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과천: 국사편관위원회, p. 379. 필자 미상이며 18세기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럼 중 종사관이 보이지 않아 1811(순조11)년의 사행으로 생각된다.
- 51) 실록에 의하면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인 태종 6년丙戌(1406) 3월 19일(己酉), 동년 3월 22일(壬子), 동년 4월 19일(己卯), 동년 9월 29일(乙酉), 동년 12월 22일(丁未), 태종 7년 丁亥(1407) 3월 9일(癸亥), 태종 8년 戊子(1408) 7월 23일(己巳), 태종 9년 己丑(1409) 4월 17일(己丑), 태종 11년 辛卯(1411) 8월 15일(甲辰), 태종 13년 癸巳(1413) 11월 16일(壬辰), 태종 14년 甲午(1414) 1월 1일(丙子), 동년 7월 17일(戊子), 태종 15년 乙未(1415) 8월 10일(甲戌), 태종 18년 戊戌(1418) 5월 15일(甲子) 등의 기사에서 시복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52) 이은주 (2005). 앞의 책, pp. 43-45.
- 53) 宣祖實錄 24집, 34년 6월 8일 甲戌
- 54) 光海君日記 태백산본, 2년 5월 19일 癸亥
- 55) 光海君日記 태백산본, 2년 9월 8일 庚戌
- 56) 光海君日記 31집 658면 3년 10월 23일 己丑
- 57) 英祖實錄 90집, 33년 12월 16일 甲戌
- 58) 英祖實錄 60집, 20년 8월 5일 己酉
- 59) 英祖實錄 90집, 33년 12월 16일 甲戌
- 6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편집위원회 (1998). 앞의 책. 通文館志, 卷六 交隣 下, 通信使行. (중략) 使一員文官堂上結銜吏曹參議 副使一員文官堂下正三品結銜典翰 從事官一員文官五六品結銜弘文校理 (후략).
- 6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편집위원회 (1998). 위의 책. 通文館志 卷六 交隣 下, 傳命儀.
- 62) 입성(入城)은 교토나 에도 등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등성(登城)은 국서(國書)를 막부 장군에게 전하기 위해 장군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63)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국사편관위원회 (2005). 앞의 책, p. 127.